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제2637호

2021. 08. 3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08. 17. 양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08. 20. 복지건설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 08. 31.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소정보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주소정보안내도등의 광고비용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12조).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교육, 각종 단체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기관을 정함(안 제15조).
-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와 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가.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현행 조례"라고 함)는 최종적으로 2017년 11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음.
 - 하지만,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고 함)은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의 이유로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하여,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표 1】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2021. 6. 9. 시행)

1. 도로명 부여 범위 확대

- : (현행) 지상 도로에만 도로명 부여
- ☞ (개정) 지상 도로 외에 고가·지하차도 및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도로명 부여

2.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소 부여 신청 가능

- : (현행) 주소를 부여할 주체가 없어 주소사용 불가
- ☞ (개정) 시·도 미결정 지역 : 행안부 장관 / 시·군·구 미결정지역 : 시·도지사

3. 사물주소 부여 신설

- ☞ (신설) 육교 승강기, 대피소, 정류장, 주차장 등에 사물주소 부여 후 사물주소판 설치

4.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시 절차 개정

- : (현행) 국민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주소정정 신청
- ☞ (개정) 주소변경 내용을 공공기관에 통보하면, 통보받은 기관이 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정 처리

5. 상세주소 부여 범위 확대

- : (현행) 공동주택을 제외한 원룸·다가구·상가 등에만 상세주소 부여
- ☞ (개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 가능

6. 조문 정비

- ☞ (개정) 제도 실효성이 적거나 사문화된 조문 삭제, 복잡한 조문 순서 정비, 유사 조문 통합, 어려운 용어 정리

7. 조문 체계 정비

- ☞ (개정) 시행령 내용 →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 시행규칙

- 또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도 법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8일 전부 개정하였고,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참고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함)도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임.

-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은 기존 제명이었던 "도로명주소"를 포함하여 기초번호,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주소정보 등"의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

○ 안 제2조는 건물번호판 외에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 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음. 이는 상위 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제24조 등을 통해 "사물주소"가 법제화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이는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참고로, 양천구에 적용될 사물주소는 【표 2】와 같이 육교승강기, 공원, 버스정류장 등 688개소로 조사됨.

【표 2】 양천구 사물주소 부여 현황

대상 구분	육교 승강기	둔치 주차장	소공원	어린이 공원	지진옥외 대피장소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계
현황 (개소)	4	2	3	139	17	356	11	688
설치자 (관리자)	도로과		공원녹지과	인전재난과	서울시 버스정책과	서울시 택시물류과		

○ 안 제3조에서는 광고비용을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시행령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광고비용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시행령 제45조제5항에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거나, ②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 ③ 그 밖에 행정안정부장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비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광고비용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안 제4조는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이는 법 제27조에서 위임 받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
-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달라진 점은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관리국장과 도로과장을 명시하였고, 위촉직 위원으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함. 또한, 위원 구성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이 되도록 한다는 조문이 삭제됨.
 -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 문제가 없음.
 -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정의하고 있음. 그 중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대행자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는 시행령 제60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안 및 현행 조례에서는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제9조제1항과 유사한 조문이며, "위원장"이라는 용어에 의미가 일부 포함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합쳐서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정비하는 것이 보다 간결해 질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
 - 안 제12조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임.
- 안 제13조는 주소정보시설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문임. 법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공제 가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 중 제14조제3항은 행안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각급 학교에서도 주소정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5조는 주소정보 업무의 범위, 위탁 대상, 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은 행안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소정보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6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